

충청북도농축산사업소조례안

의안 번호	83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1996. 1. 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- 가축위생시험소, 종축장, 잠업검사소 등 기능이 유사한 사업소를 농축산사업소로 통합 신설하고,
- 농산물원종장을 폐지(기능은 농촌진흥원 이관)하여 기능과 인력을 조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축위생시험소, 종축장, 잠업검사소 폐지
⇒ 충청북도농축산사업소
- 농산물원종장 폐지 ⇒ 농촌진흥원 이관

3. 근거법령

- 지방자치법 제105조
-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0조제2항

- 덧붙임 1. 충청북도농축산사업소조례안 1부.
2. 기타참고자료 1부.

충청북도농축산사업소조례안

제1조(목적) 가축질병의 방역과 검정, 가축개량 및 보급, 잠업 관련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, 충청북도농축산사업소(이하 "농축산사업소"라 한다)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치) 농축산사업소의 주소재지는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산70-2에 두되,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개의 사업장을 둘 수 있다.

제3조(업무) 농축산사업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.

1. 가축질병의 방역과 검정
2. 도축 및 원유검사
3. 축산물작업장 위생관리 지도
4. 중앙의 수의과학연구소 및 잠업시험장의 지역적인 연락시험
5. 가축질병의 방역 및 검정에 필요한 검사, 시험연구
6. 가축의 개량 및 우량 종축의 보급
7. 축산 및 사료에 관한 시험연구
8. 우량잠종의 생산 및 보급
9. 잠종, 상묘, 잠견의 검사
10. 잠업기술의 보급 및 잠병의 예방

제4조(소장) ① 농축산사업소에 소장을 두며, 지방수의서기관, 지방축산서기관, 지방가축위생연구관 또는 지방축산연구관으로 보한다.

②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사업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.

제5조(공무원) 소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, 그 직급과 정원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

제6조(지소) ① 농축산사업소의 소관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둔다.

② 지소에 지소장을 두며, 지소장은 지방가축위생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보한다. 다만, 중부지소장은 지방가축위생연구사 또는 지방수의주사로 보한다.

③ 지소장은 농축산사업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며,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.

④ 지소의 명칭, 위치 및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.

명 칭	위 치	관 할 구 역
충청북도농축산사업소 북부지소	충주시 금릉동 187-12	충주시, 음성군 일원
충청북도농축산사업소 남부지소	영동군 영동읍 동정리 39	보은군, 옥천군, 영동군 일원
충청북도농축산사업소 제천시지소	제천시 고암동 145-20	제천시, 단양군 일원
충청북도농축산사업소 중부지소	괴산군 사리면 방축리 709	진천군, 괴산군 일원

제7조(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다른조례의 폐지) 이 조례의 시행과 함께 충청북도가축위생시험소조례, 충청북도종축장조례, 충청북도잡업검사소조례, 충청북도농산물원종장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참 고 자 료

□ 지방자치법 제105조

지방자치단체는 특성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(이하 생략)

□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0조제2항

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(이하 생략)